민사법률행위의 분류

최 덕 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법규범과 규정들을 잘 모르고서는 그것을 철저히 지킬수 없으며 위법현상들이 나라나도 제때에 가려볼수 없습니다.》

(《김정일선집》제10권 증보판 119폐지)

민사법률행위를 그 형태별특성에 따라 옳바로 분류하여야 개별적인 민사법률행위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민사법률행위의 법적효력과 효과에 관한 문제들을 원만히 규제할수 있다.

국가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공민들사이의 재산관계는 계약과 같은 민사법률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민사법률행위는 일정한 재산관계를 설정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따라 그들사이의 민사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변경, 소멸시키는 합법적인 법률사실(행위)로서 민사관계당사자들사이의 재산관계설정의 법적기초로 된다.

이러한 민사법률행위를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정확히 분류하는것은 민사법률행위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민사법률행위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분류할수 있다.

민사법률행위는 무엇보다먼저 해당 민 사법률행위에 참가하여 상대하는 당사자 의 수에 따라 일방적법률행위와 쌍방적법 률행위, 다방적법률행위로 분류된다.

일방적법률행위는 당사자일방의 의사표 시에 근거하여 행위자와 다른 당사자들사 이의 민사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변 경.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일방적법률행위는 민사법률관계의 설정 또는 소멸의 사유가 쌍방당사자들의 합의 에 기초하는것이 아니라 일방당사자의 의 사표시에 절대적으로 기초한다.

따라서 일방적법률행위에 기초하는 민 사법률관계에서는 한 당사자의 일방적의 사표시만 있으면 상대방당사자는 그에 대 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동의)를 하지 않아 도 해당한 권리의무를 지니게 된다.

쌍방적법률행위는 반드시 두당사자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민사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법률행위이다.

쌍방적법률행위는 일방당사자의 의사표 시에 대하여 상대방당사자가 동의하는 절 차에 따라 법적효력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이다.

쌍방적법률행위는 일방당사자의 의사표시(제의)에 대한 상대방당사자의 의사표시(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해당한 민사법률 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킨다.

쌍방적법률행위는 민사법률행위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서 실천에서는 쌍방당사 자간의 합의를 그 설립기초로 하는 계약 의 형식으로 존재하다.

다방적법률행위는 둘이상의 당사자들이 동일한 민사법률관계의 설정을 위하여 맺 는 민사법률행위이다.

다방적법률행위는 일정한 민사관계의 설정이 반드시 여러 당사자들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민사법률행위의 한 형태로서 하나의 민사법률행위에 여러 당사자들의 각이한 리해관계가 동시에 반영된다.

서로 각이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를 다같이 반영하는것으로 하여 다방적법률행위는 일방적법률행위나 쌍방적법률행위에 비하여 그 설정절차와 방법에서 복잡성과 리행기간에서 장기성을 띠게 되며 개별적당사자들이 지니는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내용도 일정한 차이를 가지게 된다.

때문에 다방적법률행위는 둘이상의 당 사자들의 참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 률관계에서 많이 활용되게 된다.

민사법률행위는 다음으로 의무자의 의 무리행에 대한 대가지불의 유무에 따라 유 상적인 법률행위와 무상적인 법률행위로 분 류할수 있다.

유상적인 법률행위는 의무자의 의무리 행결과에 대한 상대방의 가치보상을 내용 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유상적인 법률행위는 당사자들의 의무 리행결과에 대한 등가적인 보상을 반드시 요구하며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의무리행 결과에 대한 보상을 가치적으로 하여야 할 의무를 서로가 지니게 된다.

민사법률관계에서 대부분의 법률행위들은 유상적성격을 띠고 존재한다.

유상적인 법률행위는 일정한 의무리행결 과에 대한 보상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것 만큼 당사자의 행위능력과 지불능력 등이 특별히 중요한 요구로 제기된다. 그것은 구 체적인 법률행위의 리행결과에 대한 책임 이 개별적인 당사자들의 행위능력과 지불 능력에 의하여 결정되기때문이다. 이로부 더 유상적인 법률행위의 당사자로는 해당 법률행위를 자기스스로 수행하고 그에 대 한 책임을 독자적으로 질수 있는 지불능력 을 가진 행위능력자들만이 나설수 있다.

무상적인 법률행위는 의무자의 의무리 행에 대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 법률행위 이다.

무상적인 법률행위는 의무자의 의무리 행결과에 대한 그 어떤 대가지불을 요구 하지 않는다.

무상적인 법률행위에서는 유상적인 법률 행위와는 달리 행위당사자의 행위능력과 지 불능력을 그 법적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필 수적인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무 상적인 법률행위가 해당한 행위수행결과에 대한 아무러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 조건 에서 당사자의 행위능력이나 지불능력상태가 크게 문제로 되지 않기때문이다.

민사법률행위는 다음으로 그의 구체적 인 효력발생시점에 따라 합의적인 법률행 위와 리행적인 법률행위로 분류할수 있다.

합의적인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관계의 설정을 희망하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그에 따르는 행위수행여부에는 관계없이 해당한 법적효력(법적구속력)을 발생시키는 민사법률행위를 말한다.

합의적인 법률행위는 당사자들의 실질 적인 행위수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사표 시의 합의를 중시하며 합의에 계약성립의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합의적인 법률행위에서는 당사자들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만 이루어지면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가 당사자들사이에 설정된것으로 본다. 즉 당사자들은 합의내용에 따르는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실질적으로 지니게 되며 그 리행결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리행적인 법률행위는 당사자들의 의사 표시와 함께 그 내용에 지적된 구체적인 행 위까지 수행하여야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민 사법률행위이다.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를 중시하는 합의적인 법률행위와는 달리 그 행위수행결과에 기초하여 법적효력을 부여한다는데 리행적인 법률행위의 특성이 있다.

리행적인 법률행위에서는 의사표시에 따르는 실질적인 행위결과에 따라 해당한 법적효력이 결정되게 되며 당사자들은 해당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법적구속력을 띠는 권리의무를 지닐수 없다.

이러한 리행적인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형태로서는 보관계약, 빌리기계약, 증여계 약 등을 들수 있다.

민사법률행위는 다음으로 그 형식에 관한 법적요구가 임의적인가 아니면 강행적

인가에 따라 임의적형식의 법률행위와 의무적형식의 법률행위로 분류할수 있다.

공화국민법은 민사법률행위의 형식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는 당사자들의 임의적선택이 인정되는 말 또는 서면형식을 예견하면서도 일부 개별적인 경우들에 한해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형식보다도 특별히 법이 정한 형식을 더 갖출것을 요구하고있다.

임의적형식의 법률행위는 공화국민법에 서 정한 일반적인 형식(말 또는 서면형식) 에 따라 이루어지는 민사법률행위이다.

임의적형식의 법률행위는 법이 정한 일 반적인 형식으로서의 말 또는 서면의 두 가지 형식중 어느것을 택할것인가 하는것 을 당사자들의 임의성에 따른다는데 있다. 때문에 임의적형식의 법률행위에서는 그 형 식에는 관계없이 당사자들의 합의만 이룩 되면 그의 법적효력을 인정한다.

이러한 임의적형식의 법률행위로서는 대 표적으로 공민들사이의 팔고사기계약이나 보관계약, 빌리기계약 등을 들수 있다.

의무적형식의 법률행위는 일반적인 형식 보다도 법이 특별히 더 요구하는 형식에 부 합될것을 요구하는 민사법률행위이다.

공화국민법은 일반적으로 민사법률행위의 형식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말 또는 서면형식의 임의성을 부여하면서도 해당 행위의 특성으로부터 보다 더 명확성을 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사법률행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무적인 서면형식이나 공증형식을 갖출것을 필수적인 요구로 내세우고있으며 이를위반한 민사법률행위에 대하여서는 그의 법적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의무적형식의 법률행위는 법이 특별히 정한 형식을 민사법률행위의 필수적인 성 립조건으로 한다.

민사법률행위는 다음으로 호상련관되는 법률행위들사이의 주종관계에 따라 주되 는 법률행위와 종속되는 법률행위로 분류 할수 있다.

호상련관된 다른 법률행위의 제약이나 제한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재할수 있 는 법률행위가 주되는 법률행위이며 다른 법률행위의 제약을 받거나 그에 종속하여 서만 존재할수 있는 법률행위가 바로 종 속되는 법률행위이다.

주되는 법률행위는 서로 련관되여있는 다른 법률행위들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성을 가진다. 이것은 주되는 법률행위가 호 상련관된 둘이상의 법률행위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행위들을 제약하거나 종속 시키는 법률행위로 될뿐아니라 종속되는 법률행위와 별도로 존재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다.

종속되는 법률행위는 주되는 법률행위의 합법적인 존재여부에 따라 그 유효성이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종속되는 법률행위는 민사법률관계에서 어떤 경우에도 독자적인 법률행위로서 존재할수 없으며 주되는 법률행위와의 호상 밀접한 련관속에서만 존재할수 있는것이다. 이것은 주되는 법률행위가 무효로 인정되면 그에 해당한종속되는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로 인정되면되기때문이다.

이러한 종속되는 법률행위들에는 일반 적으로 보증이나 전당, 저당과 같은 일정 한 채권을 담보로 하여 설정되는 담보설 정행위(계약)들이 속한다.

민사법률행위는 다음으로 그의 효력발 생근거 즉 해당 민사법률행위가 그것을 낳 는 원인과 분리되여 효력을 가질수 있는 가 없는가에 따라 원인행위와 원인과 별 도로 존재하는 행위로 분류할수 있다.

원인행위는 해당 법률행위의 기초를 이루는 원인과 분리될수 없는 법률행위이다. 원인행위의 대표적인 형태로서는 팔고사기계약, 빌리기계약, 증여계약 등이 있다.

원인과 별도로 존재하는 행위는 해당 행 위의 원인의 정당성여부에는 관계없이 법 적효력이 인정되는 행위이다. 즉 민사법률 행위의 기초로 되는 근거사실(원인)의 적 법성여부가 해당 민사법률행위의 효력발 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이다.

대표적인 원인과 별도로 존재하는 행위로서는 대외경제거래관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증권(무인증권)발행행위들을 들수 있다.

민사법률행위는 다음으로 행위자의 행 위능력여부에 따라 독자적인 법률행위와 보 조적인 법률행위로 분류할수 있다.

독자적인 법률행위는 민법상행위능력을 완전히 취득한 당사자들이 수행하는 민사 법률행위이다.

독자적인 법률행위는 다른 당사자의 간섭이나 의사에 따라서가 아니라 당사자의 독자적인 의사와 결심에 기초하여 해당 행 위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독자적인 법률행 위는 그의 법적효력과 효과도 당사자에게 직접 발생시키게 된다.

보조적인 법률행위는 민법상행위능력이 부족하거나 상실된자들의 법률행위를 대 리하는자들의 민사법률행위이다.

법무실천에서 행위능력이 제한되거나 상 실된자들의 민사법률행위를 보조하는 법 률행위는 민법상대리행위를 이룬다.

독자적인 법률행위와는 달리 보조적인 법률행위에서는 그의 법적효력과 효과가 행 위수행자에게 아니라 해당 행위의 도움을 받는 당사자들의 앞으로 발생되는 특성을 가진다. 그런것으로 하여 보조적인 법률행 위를 수행하는 당사자들은 자기의 행위결 과에 대하여 언제나 보조받는자들앞에 책 임져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민사법률행위는 다음으로 당사자의 사망이 그 행위의 효력발생조건으로 되는가 아닌가에 따라 생전행위와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로 분류할수 있다.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이 당사자의 생전에 발생하는 법률행위가 생전행위이며 당사자 가 사망된 후에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행 위가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는 민사법률행위는 다 당사 자의 생존기간에 효력을 발생하는 생전행 위로 존재한다.

그러나 일부 민사법률행위(례;유언행위) 는 당사자의 생존기간에는 그 효력을 발생 시키지 못하고 당사자가 사망된 후에야 해 당 법적효력을 발생시키는데 바로 이러한 행위가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이다.

해당 행위의 법적효력이 당사자가 사망한 후에 발생되는것만큼 사망을 조건으로하는 행위에서는 당사자가 생전에 수행한민사법률행위의 사실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확정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이로부터 법은 당사자가 생전에 한 민 사법률행위의 사실여부를 증거로 고착시 키기 위하여 생전행위의 유효조건을 별도 로 규정하고있다.

민사법률행위에는 다음으로 그의 법적 효력여부를 일정한 조건과 결부시켜 확정 하는 조건부민사법률행위도 있다.

조건부민사법률행위는 법적효력의 발생과 소멸을 앞으로 발생이 가능한 사실과 결부시키는 부대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이다.

즉 조건부민사법률행위는 그 법적효력 의 실질적인 발생과 소멸여부를 일정한 조 건에 기초하여 확정하는 법률행위이다.

이러한 조건부민사법률행위는 그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효력발생을 위한 조건부민사행위와 효력소멸을 위한 조건부민사행위로 분류할수 있다.

효력발생을 위한 조건부민사행위란 해당한 부대조건이 실현되면 그의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민사법률행위를 말한다.

일정한 부대조건을 그 법적효력의 발생기초로 한다는데 효력발생을 위한 조건부민사행위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즉 효력발생을 위한 조건부민사행위는 그 내용이아무리 법적요구에 부합되여도 해당한 부

대조건이 실현불가능하면 민사법률행위로 서의 법적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효력소멸을 위한 조건부민사행위는 당 사자들이 약정한 부대조건이 실현되면 그 에 해당한 법적효력이 소멸되는 민사법률 행위를 말한다.

일정한 조건의 실현여부를 해당 법률행위의 소멸기초로 한다는데 효력소멸을 위한 조건부민사행위의 특징이 있다. 즉 효력소멸을 위한 조건부민사행위에서는 일정한 조건의 발생여부가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소멸과 결부되는 법률사실로 된다.

조건부민사법률행위에서 그 효력을 결정하는 부대조건으로는 객관적요인들의 작용에 충분히 기초하는 사실적사유들만이 될수 있다.

만일 이미 설정된 부대조건의 실현여부 에 당사자들의 주관적의도가 작용하였다 면 그에 대하여 법은 해당 민사법률행위 의 법적효력(발생 및 소멸)을 인정하지 않 는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해당 민사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나 소멸을 위한 부대조건의 실현을 의도적으로 앞당기거나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만일 해당 조건의 발생으로 리익을 보는자가 그 조건의 발생을 의도적으로 앞당긴 경우 해당 조건은 발생하지 않은것으로 보며 조건의 발생으로 부담을 지는자가 그 조건의 발생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경우에는 해당 조건이 이미 발생한것으로 인정한다.

우리는 민사관계분야에서 실천적으로 제기되는 법률적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 극 이바지하여야 한다.